

'98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(안) 심 사 보 고 서

1998. 12. 24.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8년 12월 1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1998년 12월 15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61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('98.12.23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김종박)

- 가. 제안이유
 - '98회계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(안)
 - 지방자치법 제35조
 - 지방재정법 제29조 내지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, 제30조의 2
 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12조

- 나. 주요골자
 - '98회계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(안)
 - 예산규모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 (안)	기정예산액	(증 △ 감)	비 고
일 반 회 계	105,116,663	104,863,663	253,000	

- 주요재원(일반회계) 증 253,000천원
 - 재 산 세 증 787,208천원
 - 종 합 토 지 세 증 183,869천원
 - 사 업 소 세 증 316,786천원
 - 과 년 도 수 입 △ 96,624천원
 - 이 자 수 입 증 253,000천원
 - 조 정 교 부 금 △ 1,191,239천원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유제한, 이준석)

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(안)은 조정교부금의 추가감소로 불가피하게 감액 경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증액편성된 구세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보다 정확한 추계로 세입 결손방지와 세출예산과의 균형유지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 세출예산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의 건축지도 시설비 등에서 도시설계지구 신길1 생활권 중심인 대신시장 주변 도시설계 용역비로 2억 5,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조정하였음.

4. 심사결과 : 원안 의결

'98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(안)

의안 번호	34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12. 12
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'98회계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(안)
- 지방자치법 제35조
- 지방재정법 제29조 내지 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, 제30조의 2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규칙 제12조

2. 주요골자

- '98회계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(안)
- 예산규모

(단위 : 천원)

구분	예산액(안)	기정예산액	(증 △ 감)	비고
일반회계	105,116,663	104,863,663	253,000	

○ 주요재원 증감내역

· 일반회계	증	
253,000천원			
- 재산세	증	787,208
천원			
- 종합토지세	증	183,869
천원			
- 사업소세	증	316,786
천원			
- 과년도 수입	△	96,624
천원			
- 이자수입	증	253,000
천원			
- 조정교부금	△	1,191,239
천원			